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9. 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9. 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9.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사유

- 법률 제5894호('99. 2. 8)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이한 조항 등을 보완코자 함.

3. 주요골자

- 도로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안 제6조의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는 1989. 11. 6 조례 제1152호로 제정 공포되어 그간 2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개정사유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법률 제5894호('99. 2. 8)로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보완 개정코져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9.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